

Aug 2024. Issue 188

#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 Where Is Grace Chang?

03 ... 봉우리

## 생각과 현실

06 ... 지연된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0 ...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논리로 푸는 HS 사례

14 ...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의 품목분류

## Global Customs Insight

17 ... EU, 中 생산 전기차 대상 반보조금 확정관세 통보

##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19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3 ... FTA 특례법 행정예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및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나! 나! 나! 만을 바라보며 최고가 되라  
몰아 붙이는 세상에서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



2024 년 하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이번 올림픽에는 206 개국에서 10,714 명의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올림픽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출전선수의 나이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11 세부터 65 세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럼에도 경기에 이겨서 에펠탑이 새겨진 금, 은, 동메달을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른 선수는 10%가 안되는 730 여명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4 명의 선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16 세의 반효진 선수부터 43 세의 이보나 선수까지 예전에 비해서는 소규모의 선수단이었습니다. 달성 목표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금메달 13 개, 은메달 9 개, 동메달 10 개를 성취하며 메달순위 8 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선수가 승리할 때마다 기쁨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예상외로 좋은 성적에 국민 모두의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우승을 포함해도 약 40 명의 선수만이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00 여명 선수들 목에는 메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지연된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의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EU, 中 생산 전기차 대상 반보조금 확정관세 통보'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FTA 특례법

**행정예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및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입니다.**

봉우리는 산꼭대기의 뾰족하게 솟은 머리부분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나 단계 또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말하지요. 등산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정상인 봉우리에 오르하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동기**이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봉우리에 오르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호흡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모두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상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함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로 얻게 되는 성과를 이웃에게로 흘러 보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뒷것'이라고 부르던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대표적인 저항가수로 알려져 고문과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기 선생은 '앞것'인 사람들이 봉우리를 오르도록 준비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만 찾아다니는 세상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구석진 작은 극장에서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어쩌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도 그것 때문에 남한테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돈벌이가 안 된다며 모두들 외면하던 **아이들에 관한 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래 '봉우리'는 1984 년 LA 올림픽 때 **메달을 못 따서 선수촌에도 못 남고 집으로 돌아간 이들을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주제곡**으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 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되는 노래이기 바랍니다. 김민기 선생이 몸소 실천하셨듯이. **나! 나! 나! 만을 바라보며 최고가 되라** 몰아 붙이는 세상에서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우리** - 작사, 작곡 김민기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 (중략).....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 속의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고 김민기 선생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우리, [봉우리 - 다음 어학사전 \(daum.net\)](#)

\*\*2024 년 하계 올림픽,

[https://ko.wikipedia.org/wiki/2024%EB%85%84\\_%ED%95%98%EA%B3%84\\_%EC%98%AC%EB%A6%BC%ED%94%BD#%EB%A9%94%EB%8B%AC\\_%EC%A7%91%EA%B3%84](https://ko.wikipedia.org/wiki/2024%EB%85%84_%ED%95%98%EA%B3%84_%EC%98%AC%EB%A6%BC%ED%94%BD#%EB%A9%94%EB%8B%AC_%EC%A7%91%EA%B3%84)

\*\*\*[메달 집계 - 2024 파리 올림픽 메달 순위 \(olympics.com\)](#)

\*\*\*\*\*[RIP 김민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 #지식채널 e \(youtube.com\)](#)

\*\*\*\*봉우리 <[https://namu.wiki/w/%EB%B4%89%EC%9A%B0%EB%A6%AC\(%EA%B9%80%EB%AF%BC%EA%B8%B0\)>](https://namu.wiki/w/%EB%B4%89%EC%9A%B0%EB%A6%AC(%EA%B9%80%EB%AF%BC%EA%B8%B0)>)





생각과 현실

## 지연된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의존하는 관세행정 은 결국 기업을 지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24년 8월 너무 오래 지속되는 여름이 이제 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황순원의 소나기의 어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함과 간절함도, 젊은 태양의 정열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무지 뜨거운 지루한 여름이었다. 시원하고 울긋불긋한 가을을 오래 기다리는 것에 지쳐간다.



서 영 진

부대표/관세사  
wedin8@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필자가 세관에서 관여했던 주류수입기업의 위스키관세쟁점은 6년이 걸려서 행정법원에서 마무리 되었고, 2013년에 시작한 다단계기업의 수입가격 관세쟁점은 10년이 지난 2023년에 행정법원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 사이 세관과 조세심판원을 거쳐 심급별로 다툼이 있었고, 납세자와 처분청의 준비서면 작성과 자료준비에 걸린 시간도 있겠지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재판과정으로 행정법원 판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사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버렸더니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놀랐다.

대한민국은 급한 국민성으로 인해 결정이 빨라서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던가? 그 성격들이 단기간에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오히려 요즘은 만만디라는 중국이 더 빨리 결정하고 변한다고 한다.

친구 어머니가 혈액관련 중한 병으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6개월이상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중한 병에 조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친구에게 주치의에게 "그 병에 대해 아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달라" 물어 보라 했더니, 의사는 그제사 자기 병원에는 그런 의료진이 없으니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친구어머미는 해당 분야 명의가 있다는 전문병원을 찾아서 몇 개월 치료를 거쳐서 지금은 완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심장수술을 맡길 수 없다.

특수한 관세와 조세분야에서 행정법원 판사에게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기업에서 납세와 관련해서 불복을 제기할 경우 행정법원 판사는 관세와 조세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최대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예 판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알아 들을 수 없는 내용은 아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바른 결정이 내려지겠는가

특히 관세는 HS 분류통칙과 예외, 수출입 통관절차, 특수관계자간의 관세가격, 로열티과세, 관세환급, FTA 원산지결정과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한 과세 등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고, 법관의 일반적인 법률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심판과 행정법원을 거쳐서 6 년과 10 년을 거쳐서 하나의 관세쟁점이 마무리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현재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HS CODE 분류쟁점도 2019 년에 시작했으니 6 년이상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법원에서 1 심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와 의류, 석탄에 관한 쟁점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전가격 관세평가, HS CODE 분류, 로열티 가산, 관세환급 등 관세분야에서 수십년간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한 전문가가 몇 시간이나 수일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상급 의사결정 기구라고 해서 그 손에 맡겨진 사이에 수년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그 사이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미결정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장기간의 불확실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에 기업은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약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행정법원 판사에게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전문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빠른 결정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어야 한다. 세상에 많은 일이 때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 그 시대를 반영한 타이밍에 따라 결정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다.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우선은 조세와 관세를 다루는 법원을 별도로 설립해서 행정법원도 세분화 해야 한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조세법원과 무역법원을 따로 두어서 전문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 전문법원에서 처리할 경우에 청구인과 처분청이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은 판사가 금방 골라 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행정법원체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은 행정부내의 기관이니 아무래도 처분청의 의견에 치우칠 수 밖에 없고, 행정법원 판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신중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과세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좀 심해도 어차피 제대로 판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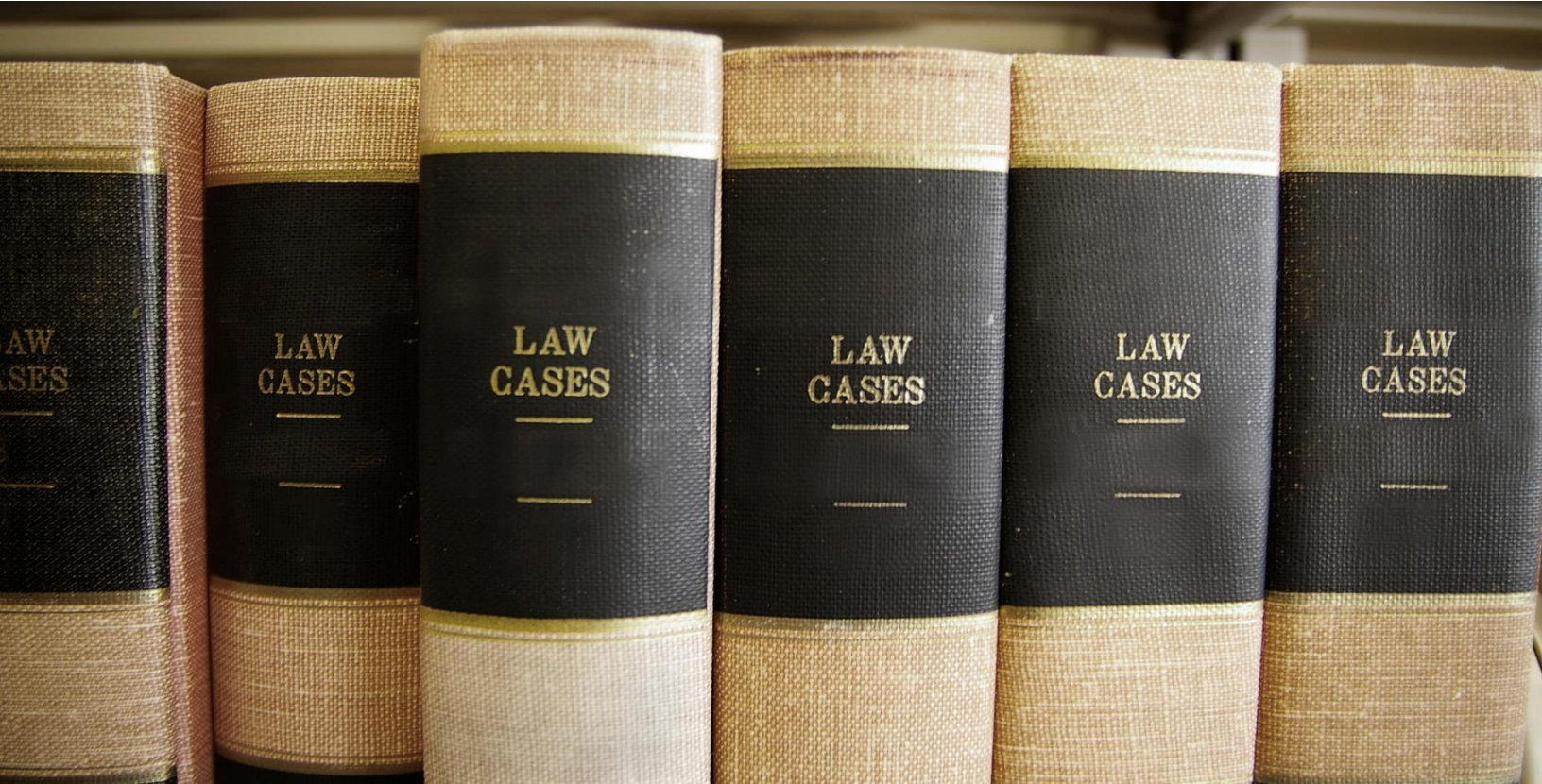
행정기관내의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도 15 명이상으로 대규모로 구성하지 말고 1 부와 2 부로 나누어서 7 명 정도의 내부와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구성해서 결정을 하고, 만약 해당 결정에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 쉬운 것은 쉬운 대로 빨리 결정을 하고, 어려운 것은 천천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의 절차만을 따르기 때문에 결정이 느려져 있다.

엔비디아의 GPU 를 통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기존 고급 승용차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듯이, 지금 우리는 너무도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관세와 조세분야의 결정에 있어서는 너무도 느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전문가집단인 행정부처에서 과세를 대충해서 납세자가 행정법원에서 겨루자고 하지 말고, 전문가가 모여 치밀한 서면과 토론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와 조세를 직접 다루는 전문법원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이 미루지 말고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 최신 관세 판례 분석

#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사건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19.부터 2019.3.22.까지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TUBE-CONNEC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12건으로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5.9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장 유 진**

관세사

yjjang@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가. 처분청 광양세관장은 2023.4.19. 수입신고번호 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세관 분석실에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은 2023.7.4.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FCN1 5.8%~5.3%)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고, 광양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7608.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0.13. 처분청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0.1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9.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쟁점사항]**

쟁점물품(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을 연결구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가 분류되는 HSK 제3917.33-9000호와 그 밖의 차량용 부품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함유량 99.79%,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 미만인 알루미늄 관으로서, 양 끝단에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부위의 부식방지와 연결의 편의

성을 위해 구리 관 20cm~30cm를 고주파 공정 접합 용접으로 접합하고, 외관보호와 부식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열수축튜브를 피복한 상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외부 충격 보호와 내부 온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부위의 끝 부분인 동파이프를 발포성 보온재에 삽입하고, 밴딩 및 포장을 거쳐 출하된다.

###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는 쟁점특허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기술이 체화되어 공기조절기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제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특허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물품과 같은 부분품은 해당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냉매를 이송 또는 순환하기 위한 용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체인 공기조절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계 공학상 고주파 용접을 통해 완제품인 공기조절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기조절기 전용 부분품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8415호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2.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15.90호로 분류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 작업, Cap 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지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해외 관세당국 역시 공기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구리관에 대해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세번이 아닌 구리관 세번(HS 제7411호)으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구리 관은 용도가 동일하고 가공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물품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아닌 주성분에 따라 알루미늄 관(HS 제7608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해외 품목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중 금속관 연결장치 및 연결방법에 대한 특허 기술의 사용 여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계가 없다.

(마) 쟁점물품은 제15부 주9, 제76류 주1 마의 “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해야 한다.

### 3. 판단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부분품이고, 공기조절기에 전용되도록 쟁점특허 기술이 체화되어 공기조절기 전용으로 사용

되도록 설계. 제조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관36, 2012.5.29.)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참조), **2)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 작업, Cap 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지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의 물품은 관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으로 가격 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7호에서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4)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는 점**, **5) 쟁점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 최대 중량을 가지고, 고주파 공정 접합 용접을 한 양 끝단의 구리 관 부분은 관 전체의 길이 5,000mm 부분 중 각각 200~300mm로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의 품목분류

## 1. 개요

화학 공업은 전자, 화장품 등 다른 유관 산업부문에 대한 원료 제공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화학공업 생산품이 거래되곤 합니다.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 화학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소명 요구가 많아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화학물품을 취급하는 관련 기업들은 MSDS, 카탈로그, 기술문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당국의 요구에 정확한 품목분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여야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금속 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내사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으며, 최근 베트남 심사 시에 이슈가 된 화학제품 품목분류 이슈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 선 응**

관세사 자격  
swkim@shcs.kr

[ PROFILE ]

- 신한 베트남 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2. 품목분류의 검토

### 1) 물품 설명

품명 : Pickling preparation for metal surface

구성 및 용도 : 황산, 용매(Butyl carbitol),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으로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 표면의 산화물 등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금속 표면 처리 \_ 금속표면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는 일로, 금속제품의 표면을 적당히 처리하여 내부 결점을 은폐함으로써 개선하려는 것이다. (출처 \_ 네이버 두산백과)*

### 2)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의 품목분류 검토

#### (1) 제 3810 호 호의 용어 및 해설서 검토

관세율표 제 3810 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 · 땀질용 ·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 · 땀질용 ·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됩니다.

더불어,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1)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쇠비듬·녹·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사용된다. 침지조제품은 보통 묽은 산(염산·황산·플루오르화수소산·질산·인산등)을 기본 재료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유기화학품 (29 류) 분류 여부 검토

한편, 같은 표 제 29 류 주 제 1 호 마목에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황산을 물과 용매에 용해한 물품으로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 표면의 산화물등을 제거하는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된 것이며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가 아니므로 제 29 류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 (3) 금속 세척제(3402 호)와의 분류 여부 검토

제 3810 호 호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금속 세척조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제 3402 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402 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 3402 호 분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면, 제 3810 호에 분류되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은 통상 묽은 산(Acid)을 포함하여 표면의 스케일 제거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제 3402 호의 금속 세척조제품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계면활성제, 조제 청정제 등이 분류가 됩니다. 본 물품은 황산과 물, 용매가 혼합된 금속 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으로서 제 3402 호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 (4) 품목분류 검토

상기 내용을 종합하건대, 본 물품은 황산, 용매, 물 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의 산화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에 의하여 제 3810.10-1000 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 베트남 화학제품 품목분류 심사 이슈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에서는 화학 물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하는 혼합(Mixture) 화학 제품이 제 3208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조사 및 물품 분석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 3208 호에는 제 32 류 주 4 호에 규정된 용액으로서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상 용도가 특개되지 않은 혼합 물질인 화학제품에 대하여 저세율인 3824 호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 세관에서는 물품 분석 후 플라스틱 수지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고세율인 제 3208 호 세번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SDS 상 폴리머나 합성 수지 등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품목분류에 특히 유의가 필요하며, 제 3208 호(32 류 주 4 호에 규정된 용액) 분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유관 기업들은 상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 EU, 中 생산 전기차 대상 반보조금 확정관세 통보

EU 집행위원회는 8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 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EU 27개국이 승인하면 올해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EU로 수입되는 전기차의 기본 관세율은 10%이나, 중국산 전기차는 기업별로 상이한 반 보조금 관세율이 추가 부과된다. EU의 조사에 협조한 중국기업은 31.3%, 비협조한 중국기업은 46.3%, 테슬라에 19%가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중 중국기업에 적용되는 최종 수입 관세율은 BYD 27%, 지리 29.3%, 상하이 자동차는 46.3%이다.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이번 8월 20일 발표된 확정 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아 시장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하고,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했다.

한편, 지난 8월 10일 관영 신화통신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예비조사 발표 이후 적용한 임시 관세 조치(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EU를 제소했다고 공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EU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기차 산업체인 및 공급망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WTO는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EU의 조치에 반발하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드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 상태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 1. 개정사유

-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 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 권리사용료의 확정가격 일괄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 편의 제고하고자 합니다.
- 무료 운임 과세방법 및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의 명확화합니다.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 절차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학현

관세사

hhkim@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2. 개정내용

- 권리사용료 확정가격 일괄신고 대상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을 포함(\$21)
- 총지급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명확화(\$22)
  -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총지급 권리사용료에서 공제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제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산출이 가능함을 규정
- 무료 운임 등의 과세방법 명확화(\$25)
  - 운임 등이 무료인 경우 통상운임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신청 방법 개선(\$43 · \$48)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규정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접수증 교부 절차 개선(\$48)
  - 신청서 접수일을 신청서 제출일에서 접수증 교부일로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절차 개선(\$49)
  - 사전상담 수행 본부세관장 지정, 사전상담 기록·유지 등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 요청 및 사전심사의 절차 정비(\$50 · \$51)
  - 사전심사 검토 요청 본부세관장에 대한 배부 기준
    - (배부) 본사 소재지 세관, 주통관지 세관순으로 배부
    - (관할) 대구세관·광주세관 →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평택직할세관 → 인천세관
  - 신청사항 검토표 작성 및 등록, 청렴협약서 서명 및 보관, 근무시간 외에 현장방문, 사전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사전심사 내용 기록·관리 및 통보·보고 등
  - 사전심사 중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를 반려사유로 규정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결과 처리 절차 개선(\$52 · \$53)
  - 실무회의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특수관계 사전심사 재심사의 처리 절차 개선(\$54)
  - 재심사 시 사전상담 및 실무회의 생략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 등의 처리 절차 개선(\$55)
  -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사유 발생시 검토 의견 통보
  
-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처리 절차 개선(\$56)
  -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조치 및 재검토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 처리 절차 개선(\$57)
  - 연장 승인 시 확인사항, 불승인 시 신청인 및 세관장에 통보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1. 개정사유

□ 소요량 통합 산정이 가능한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범위를 명확히하고,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소요량 산정방법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 판매 자동차용 경유 등에 의무적으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최초로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단위소요량 적용기간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석유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식 명확화 등

- 석유제품에 대한 연산품 소요량 산정시, 국내 법령\* 및 국제 거래기준\*\* 등에 따른 제품군별로 통합산정을 허용(\$15의2 신설)

\* 국내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구분 및 품질 관리

\*\* 국제기준 : S&P Global Platts(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 기업) 등의 국제 원유·석유제품의 시황 및 가격 기준

- 연산품(석유제품)의 구분기준 등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대상〉

| 현 행   | 개 정                                      |
|---|--|
| ①원재료 실제 사용량 적정 여부<br>②부산물 발생·공제비율 적정 여부<br>③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정확 여부<br>< 추 가 > | ] 현행과<br>같음<br>④연산품 석유제품의 구분 기준<br>적정 여부 |

-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투입된 수출용원재료(원유)의 적정 소요량 산정을 위해 '연산품 1단위 가격' 계산 시 원유의 투입 물품인 바이오에너지의 투입가격·물량은 제외토록 명문화
  - ※ 「석유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지침」(세원심사과-1367호, '23.6.9.)을 고시에 반영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의 소요량 적용 기간 확대(§11)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인 경우 소요량 산정 기간 중에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 방법에 따른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6월이내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소요량 산정기간을 정하고 산정된 소요량을 산정기간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출한 물품에 적용

□ 국내 생산·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기타 개선사항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수불 → 출납) 정비(§2, §13, §17) 등
- 준용 행정규칙명 변경사항 반영(§20②, §27)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 FTA 특례법 행정예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및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특례법”) 개정 관련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 1. 개정 이유

첫번째 개정 이유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확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정 동 희**

관세사

Jdh9410@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2. 개정 내용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사오니 수입통관 및 FTA 실무 시 참고 바랍니다.

| 개정 조항                                       | 주요내용  |
|---|---|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br>(안 제 9 조 제 2 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변경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허용함                           |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br>(안 제 31 조 제 1 항)     |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br>(안 제 32 조 제 1 항) |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br>(안 제 36 조 제 1 항)      | 원산지증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율을 현행 100 분의 40 에서 100 분의 60 으로 인상함                        |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